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5년 5월 4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5년 5월 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1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05년 5월 16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총무과장 김영의)

□ 제안이유

- 공무원이 종사할 수 없는 영리업무의 한계를 정하고 검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2005. 3. 18, 대통령령 제18739호)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비밀엄수 및 영리업무의 금지 등 전국적인 통일을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정함.(안 제3조의2)

- 공무원이 종사할 수 없는 영리업무의 한계를 정함.(안 제26조)
- 「지방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안 제28조)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 조례 제26조(영리업무의 금지) 4호에서 그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 어느 범위까지라고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현재 다수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부업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 아내가 하거나 친지 등 가족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실제 공무원이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 조례가 개정된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타인의 명의로 했을 때 법으로 구속할 수 있는 것은 없지요?	○ 현재는 그렇습니다.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76호
의결 년월일	2005.5.19 (제119회)

제출년월일 : 2005. 5. 4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공무원이 종사할 수 없는 영리업무의 한계를 정하고 겸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제정(2005. 3. 18, 대통령령 제18739호)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비밀엄수 및 영리업무의 금지 등 전국적인 통일을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정함.(안 제3조의2)
 -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

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공무원이 종사할 수 없는 영리업무의 한계를 정함.(안 제26조)

다. 「지방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안 제28조)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27조 및 제28조를 각각 제29조 및 제30조로 하고, 제26조를 제4장 제27조로 하며, 제4장에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시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시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제27조(종전의 제26조)제1항중 “지방공무원의영리업무의한계에관한규정(대통령령)의”를 “제26조의”로 한다.

제5장에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공무원의 범위) 「지방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
2. 시의회의원

제2조제1항중 “지방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법」”으로 하고, 제10조

제3항중 “재외공무원복무규정”을 “「재외공무원 복무 규정」”으로 하며, 제12조제2항중 “공무원증규칙”을 “「공무원증 규칙」”으로 하고, 제18조제2항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으로 하며, 제22조중 “병역법”을 “「병역법」”으로,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으로,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23조제6항중 “상훈법”을 “「상훈법」”으로 하며, 제27조(중전의 제26조)제1항중 “지방공무원의 영리업무의한계에관한규정”을 “「지방공무원의 영리업무의 한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u> <u><신 설></u></p>	<p><u>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u> <u>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u> <u>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u> <u>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u> <u>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u> <u>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u> <u>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u> <u>사항</u> <u>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u> <u>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u> <u>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u> <u>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u> <u>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u> <u>을 줄 수 있는 경우</u> <u>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u> <u>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u> <u>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u> <u>침해할 수 있는 경우</u> <u>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u> <u>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u> <u>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u> <u>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u> <u>가 있는 경우</u>

제4장 영리업무 및 겸직

<신 설>

제4장 영리업무 및 겸직

제26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시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시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하는 것
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와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 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p>제26조(겸직허가) ①공무원이 지방 공무원의영리업무의한계에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한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p> <p>② (생략)</p> <p>제5장 정치운동</p> <p><신설></p>	<p>제27조(겸직허가) ①-----제26조에 ----- -----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5장 정치운동</p> <p>제28조(공무원의 범위) 「지방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장 2. 시의회의원
<p>제27조(정치적 행위) (생략)</p>	<p>제29조(정치적 행위) (현행 제27조와 같음)</p>
<p>제28조(시행규칙) (생략)</p>	<p>제30조(시행규칙) (현행 제28조와 같음)</p>